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6. 16.(목)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보고안전>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전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201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2016년도 분담금 징수방향입니다. 징수대상은 지상파방송사 및 종편·보도PP 등 총 54개 사업자입니다. 최종징수율은 2015년도 징수율과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화를 고려하여 일부 사업자는 변동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분담금 면제·경감은 시행령에 따라 해당 연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방송광고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분담금을 면제하고, 자본결손 사업자는 결손율 만큼 분담금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른 고시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2016년도 최종징수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18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화를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광고매출액이 변동되어 징수율 구간이 변화된 청주방송 등 5개 사업자의 징수율을 조정하였고,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대구MBC 등 13개사의 징수율은 상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기재부·규개위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후에 8월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결정을 했던 고시안과 모든 것은 동일하나 지금 개정 내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변동된 것과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된 곳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던 2분의 1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 차이점이지요?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시 개정안을 보니까 이번에 징수율을 정하는 것이 지상파, 종편·보도PP 전체이지 않을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별표 2>에 보니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아까 앞에서 보고하신 대로 현행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정된 경우가 대구MBC, 춘천MBC 등 쪽 나와 있는데 이 개정안만 놓고 보면 종편이나 보도전문PP의 경우에 여기에 표시가 안 나오니까, 현행과 같으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이 아니고 누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그것이 궁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말씀하신 대로 작년과 동일하게 종편·보도PP는 징수하기 때문에 <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0.5% 징수를 결정한 것처럼 올해 종편·보도PP는 0.5%를 징수하되, 작년에는 이것을 유예한 바가 있었는데 올해는 징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의견은 뭐냐 하면 결국 고시 개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규제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실제로 심사를 받든지, 아니면 비중요규제로 해서 심사를 생략 받든지 간에 이 자료를 보는 어떤 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편이나 보도전문PP는 징수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 이광용 재정팀장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형식적으로 고시에서는 지상파는 <별표 2>로 최종징수율이 나와 있고, 종편·보도PP는 <별표 3>으로 되어 있어서 변동이 전혀 안 되다 보니 <별표 3>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안전에 <별표 3>에 종편·보도PP를 하나 추가해서 ‘변동 없음’이라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분명하게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변화는 종편에 방발기금을 처음으로 징수하는 것이지요?

○ 이광용 재정팀장

- 예, 맞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결정은 작년에 했고, 그러나 1년 유예했고 금년부터 0.5% 징수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층이 있기 때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방발기금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당기순이익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송사의 경영을 우리가 책임지고 방발기금을 징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세금과 다른 방송사들이 다 분담해서 만들어 놓은 방송인프라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익을 내면 회비 같은 분담금은 내고, 이익을 못 내면 안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부위원장님 말씀은 분담금을 정할 때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분담금은 기본적으로 방송광고매출액으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최종 징수율을 적용할 때 당기순이익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증감 정도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최종징수율에 담겨져 있고, 다만 당기순이익은 나중에 면제 경감을 할 때 참고사항이라서 분담금 징수를 반드시 당기순이익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1년여 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새롭게 나오니까, 징수절차도 광고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먼저 광고를 수주했으면 거기에서 방발기금을 먼저 떼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경영을 흑자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자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이익을 못 내면 아파트 관리비를 안 내는 것인가와 비슷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 인프라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방발기금은 다과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면제다, 이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비판과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혜 논란이 많았고, 그나마 이번부터는 종편도 다 방발기금을 내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창조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는데 방송사업자가 적자라고 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고 그 적자인 상황을 고려해서 감액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자본결손이 심한 경우에는 또 그 비율에 맞춰서 감액해 주는 것이고, 기본적인 정수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자인지, 흑자인지에 관계없이 같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해외방송 사례는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방발기금 같이 징수하는 제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방송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연구가 안 되어 있으면 놔두시고,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이광용 재정팀장

-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저희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이고,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나. LGU+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LGU+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된 LGU+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사와 관련 유통점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거부·방해와 관련된 사실관계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3일간 조사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입니다. 6월 1일과 6월 2일 담당조사관들이 LGU+ 본사를 현장 방문해서 사실조사에 대한 협조와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LGU+ 관련 임직원들이 사실조사의 근거에 대한 소명 없음과 조사 통보기일 미준수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

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6월 1일 LGU+는 사실조사의 근거와 통보기일 준수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6월 2일 우리 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제13조에 근거한 사실조사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이후 6월 3일 담당조사관들이 LGU+ 본사를 다시 방문하여 사실조사에 대한 협조와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6월 1일과 2일간 담당조사관들이 사실조사의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GU+ 관련 임직원들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이 필요하고,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통상적으로 사실조사를 완료한 이후에 본 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에 포함시켜서 함께 처리해 왔습니다만 금번 조사 거부·방해에 관하여는 별건으로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LGU+ 관련 임직원들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제출받고, 과태료 부과(안)에 대한 의견조회 그리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령에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각각의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 가지 유형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하나의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보면 관계자들에 대한 현장조사확인서 제출 그리고 의견조회,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의결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혹시 관계자들에 대한 확인서 징구는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오늘 내일 중으로 받고, 본사를 다시 방문을 해서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자가 사인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 조사관의 확인서 작성 내용과 당사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내일 중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앞으로 확인서를 제출받고 또 사무처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행 중인 본안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또 다른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때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가중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때 가서 또 저희가 별개로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생각에는 오늘 사무처에서 보고한 대로 통상 본안 사실조사와 함께 조사에 협조를 잘했느냐, 안 했느냐, 거부를 했느냐, 방해를 했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처리해 왔지만 이번 경우에 조사 거부·방해 여부에 대한 건을 별건으로 분리해서 선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계획들을, 법령에서 정한 듀 프로세스(Due Process)를 거치되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LGU+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나중에 우리들이 하겠지만 그 논란이 있었던 것은 6월 1일부터 3일 사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단호하게 우리들이 대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전체회의 때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사실조사 거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내부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불협화음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우리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상임위원들에게 먼저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보고받기 전까지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관들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을 보면 언론보도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밝혀야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조사관들께서 'LGU+ 본사를 방문했을 때 본사 출입구부터 막아서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고, 또 일부 보도는 '몸싸움이 있었다', '고성이 오갔다', 'LGU+ 법무 담당 임원이 책상을 내리치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온갖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조사에서 나오겠지만 우선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면 언론에 나온 것과 지금 현재까지 사실확인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우선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조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유출이 된 것도 저희들 실수가 있지 않으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사업무에 참고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실관계에 있어서 우리 조사관들이 LGU+ 본사를 방문했을 때 출입구부터 제재를 당한 것은 아니고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통상적인 조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첫째 날은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대외협력 부서와 조사의 직접적인 해당부서인 BS본부 담당 관계자들이 나와서 응대를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후 4시까지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저희 조사관들에게 이야기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관련된 자료를 법무실 쪽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겠다”는 이유로 4시까지 주지 못한 일이 이루어졌고, 6시경에 우리들이 철수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법무실 쪽에서 두 가지 이유를 내용으로 한 문서를 우리 조사관들에게 직접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날 6월 2일 날의 경우에는 오전 9시 45분경 우리 조사관들이 다시 방문을 하였습니다만 그때는 법무실장이 직접 응대를 하면서 대외 쪽에서는 그런 응대의 권한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법무실장이 직접 응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한 15분 정도 우리 조사관들과 의견교환이 있었고 이후 과정에서 일부 책상을 두드리거나 언성을 높인 바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사전적으로 법률 검토해 본 결과, 예를 든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 형법상의 폭행이나 또는 폭언, 몸싸움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조사 거부는 단말기유통법상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법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패썹죄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 또 규제기관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법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또 사업자들이 그것을 부당하게 느끼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충분히 준수해 주시고….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결국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고, 또 사업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거부한 경우가 명확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어떤 입장,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절차를 잘 지켜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현재 조사 거부·방해·기피가 있었는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조사확인서, 의견조회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진행 중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럼에도 오늘 보고하는 것은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또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단 중간에 보고하는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는 법령 적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의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그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가능한 신속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밝힐 예정으로 있지요?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자료를 보면 LGU+ 측에서 사실조사 근거를 따져 물었고, 또 통보 기일을 준수했느냐 하는 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통상 우리가 사실조사를 하러 나갔을 때 사전에 미리 근거를 설명해 주고, 또 통보 기일을 사전에 기간을 준수해서 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렇게 늘 해 왔습니까? 이번은 안 했던 것인가, 그 둘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저희들이 기존에 조사업무는 수없이 있어 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적근거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 보시면 우리 위원회가 법 위반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통해 인정하게 되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초부터 시장 상황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법소지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사관들이 조사를 개시할 당시에 현장에서 직접 다 조사의 이유, 기간, 대상, 범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특히 관련 법령에 조사기일 통보와 관련해서는 예외조항으로 규정에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조사의 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저희들이 7일 전에 통보하기보다는 통보 없이 하되, 다만 두 가지 조항을 조화시키기 위해 공문을 제시하면서 곧바로 합니다. 예외조항상 통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가능하면 공문서를 들고 가면서 당일 날 알려주면서 조사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사전에 통보하면 아무래도 자기들의 위법사실을 은닉하거나 또는 서류를 폐기하거나 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조사가 힘든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예외조항을 둔 것이지요?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사전에 통보 없이 곧장, 소위 우리가 검찰·경찰 수사를 이야기하면 영장제시와 함께 바로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불가피성이 인정됐는데 불구하고 LGU+ 측에서는 그런 예외조항을 모르고 있었던 것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의하고 “왜 이렇게 사전통보 없이 할 수 있느냐?”, “또 법적 조사를 하게 된 근거가 뭐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통상 조사 기법상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불시에 해야만 단속의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또 굳이 우리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사실조사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굳이 사업자에게 사전에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거기에 대한 우리 위법성은 없는 것이지요?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를 사실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로 볼 것이냐 하는 기준이 문제라고 봅니다. 통상 조사를 나가게 되면 본사나 또는 사업장, 판매점에서 본능적으로 조사를 피하거나 항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굳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전에 반드시 조사를 저지해야겠다, 물리적으로 막아야겠다는 계획을 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거의 그렇게 거부하는 몸짓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6월 1일 날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어떤 위해나 폭행을 가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분명히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언성을 높이거나 또는 탁자를 쳤다든가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과연 거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명백하게 처음에는 저항을 했지만 그것을 방해라고 본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더 물리력이 있어야, 또는 시간적으로 얼마나 끌어야 방해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승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준 마련보다도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서 지금 조사 거부·방해 또 기피가 한 조항에 한 묶음으로 되어 있지요?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따로따로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모호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가다듬어서 사업자들 쪽에서 볼 때 이것은 이렇게 되면 분명히 거부로 간주가 되는구나, 방해가 되는구나, 기피로 간주가 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승복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서 이번 기회에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법인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경우에 LGU+ 측에서 간부가 조사를 거부했다, 또는 방해했다, 기피했다 이렇게 판정이 날 경우에 그 개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병합해서 법인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서 함께 부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에 대한 책임만 묻게 됩니까? 그런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함께 부과가 가능합니다.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개인에 국한을 할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보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같이 병합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개인도 예를 들어서 간부A, 간부B 이렇게 해서 가담 정도, 방해의 정도 이런 것도 따져서 몇 명에게 물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자가 어쨌든 우리 조사를 거부한 것은 거의 사상초유의 일이라고 봅니다. 없었던 일이 벌어진 만큼 이번 기회에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서 제시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 부과도, 기준도 엄정하게 적용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업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조사를 어서 신속하게 빨리 마치고, 그쪽 진술도 받아서 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그간의 조사 거부·방해의 유형, 또는 양태라고 하면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통사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유통점에서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또 예를 든다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통사에서조차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다 참작하되, 이번 건의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지연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아예 출입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사례, 컴퓨터 자체를 파손하는 사례, 자료를 파괴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참작을 하되, 이번 건은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법성 여부의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간단히 하세요.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요. 여기 안건에도 나와 있다시피 6월 1일과 2일 상황은 우리가 분명히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겠다고 LGU+ 측에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6월 1일과 2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팩트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우선 그것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나, 방해나, 기피나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과정에서 우리 조사관들에게 LGU+ 임직원들이 했던 행위는 그중에 한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이미….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그런 부분도 고려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중요한 사실 자체는 고려 요인인 것이지 핵심은 6월 1일과 2일에 위원회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LGU+ 쪽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요. 이것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약간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사실관계를 요약해서 쓰다 보니까, LGU+ 임직원들이 사실조사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이냐?’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취지는 지금 과거에도 사례가 드물게는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단독조사지요?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독조사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기에서 사실조사 근거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던 것은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없이 LGU+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조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사실조사 근거는 그런 취지로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에 제가 질문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실태점검을 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단독조사가 결정된 것이지요?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1차 실태점검이 있었고, 그 후에 또 4월부터 2차 실태점검이 있었습니다.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 이미 2월 중순에 실태점검을 할 때에는 시장 상황이 과열 조짐이 있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경쟁사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제보나 신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태점검이라는 것은 이통3사를 공히 점검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1차는 3개 사업자를 다 했고, 2차는 1차 결과를 토대로 2개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했으며...

○ 김재홍 부위원장

-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2개사를 좁혀서...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렇게 해 간 것입니다.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을 바탕으로 단독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 처

분은 지금까지는 사실조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적으로 시정조치나 제재 수위에 대해서 논의할 때, 심의·의결할 때 함께 해 온 것입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이번에는 분리해서 조사 절차상 문제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우선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왜 이렇게 분리해서 과태료를 먼저 처분하느냐? 지금까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고,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방통위의 위신과 직무 수행의 엄정성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겠지요?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LGU+ 임직원들의 의견조회, 이것은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상 당사자들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 말고 과태료 부과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과태료에 대한 것이지 나중에 심결 때 과징금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따로 합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그것은 또 별도로...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의견청취가 있지요?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대체로 LGU+ 측은 같은 의견이겠지만, 그러면 의견진술은 문서로 받으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그렇습니다. 문서로 의견조회가 나가고 저쪽에서 문서로 다시 제출받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좋습니다. 저는 그 기간에도 긴급 사태였습니다만 단호하게 의지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정책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현장 상황에 대한 사실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황파악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단호한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GU+ 측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통상 이통사 쪽에서는 영업 부문이 와서 조사관들을 만나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창구는 대외 쪽에서 하고….

○ 김재홍 부위원장

- 대외업무 쪽은 CR 쪽에서 하고….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이번에 LGU+는 법무팀이 앞에 나서서 설명을 요구하고 근거를 요구한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자세한 사정은 저희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다른 경우에 비해서 이것이 특이한 점인데 그 배경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도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과태료 처분을 신속하게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엄정하게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업계로부터 반발을 받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명확히 할 부분은 만약에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조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고,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또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심의·의결을 할 때 혹시 그 대상자가 출석해서 의견진술하기를 원하면 기회도 부여가 되는 것이지요?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금 전에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방해·거부·기피의 사례가 꽤 있었지 않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동통신사 차원도 있고 판매점 차원도 있는데, 그런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이것이 시행령에서 5,000만원 이하, 1회 위반 시 500만원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사업자에게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도 적정성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직접 한 개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때에는 또 개개인의 개별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금액을 정해 놓으면 가담 정도가 더 중한 사람과 가벼운 사람을 우리가 적절하게 구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꼭 조사업무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정액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경중을 가려서 정확하게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가 너무 넓으면 또 우리가 재량을 너무 행사한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작은 범위라도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경중을 가려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장기적인 일이지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해·거부·기피에 관한 조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고안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5월 말부터 6월 5일까지 한 일주일여 기간에 위원장님께서 해외 출장으로 부재 시에 방통위의 위신과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이 벌어져서 부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감입니다만 지난 회의에서도 저는 그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하고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서 방통위의 위신과 직무수행의 엄정성을 하루속히 회복하기 위해 공익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던 것이고, 어느 특정 상임위원님의 개인적인 명예·불명예 같은 것을 생각하

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책당국자인 상임위원이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그 이유 근거와 정책 철학을 설명하면 되는 일이지 명예·불명예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주 위원께서 본인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니,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운영이 좀 더 성숙하고 합리적인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간략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제가 LGU+ 사실조사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들었다는 발언을 하신 것은 그 취지와 의도가 무엇이 됐든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LGU+ 사실조사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하거나 의견을 피력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이용자정책국의 국장, 담당과장, 조사관들은 물론 여타 사무처 어느 직원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상임위원과 논의를 한 바도 없으며, 어느 매체, 어느 기자와도 그런 대화도,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이거나 논의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상임위원이 대외에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왔고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도 그렇고, 특히 조사업무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LGU+ 사실조사에 반대했다, 또는 반대한다고 들었다는 등 어떤 이야기들도 사실과 전혀 다르고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저는 방통위 안팎에서 그 누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하거나 풍문, 루머 등을 퍼트리는 것은 전형적으로 흠집 내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35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제가 견지해 온 공직관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방통위 안팎에서 누구든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터무니없는 주장, 발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고, 거기에 상응하게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혹시 그러한 풍토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차제에 반드시 불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건전하고 다양한 의견교환과 심층적인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위원들 간에 협의가 없는 채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개진을 통해 이 자리에서 정제되지 않고 숙려되지도 않고 감정적인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회의 진행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통위 전체회의는 일반적인 워크숍이나 공청회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님들 모두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앞으로 더 적극 협조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특별히 건의드리고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기조실장에게도 특별히 부

탁을 드립니다. 만약 앞으로 그러한 논의가 또 이루어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방통위의 최소한 품위 유지를 위해 그러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3기 방통위원 임기가 앞으로 9개월 남짓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3기 방통위가 원만하고 성숙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주에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과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위원회 운영을 원만하게 하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회의 때 기타 논의사항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기타 논의사항이라는 것이 반드시 안전에 국한해야 하느냐 하는 데는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고, 또 법적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저희가 승복을 한다면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결론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주로 내는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게 우리 의견이 배척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주 위원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분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분란이, 이견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저에게 부여된 방통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발언을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제가 혹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같은 의견인데, 다만 마지막 부분에 이기주 위원님과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그것을 합쳐서 정리해 보면 그런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가능하면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자료가 공유된 상황에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결과, 안전으로 제대로 상정이 되지 않는다는 한 경우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없이 다른 위원님들 사이에 전혀 자료가 공유되지 않고 의견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회의에서는 위원님들 사이에서 자료가 공유된 안전에 대해서 깊이 있고 성숙하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방통통신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최상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은 자제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덧붙여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이 더 원만히 그리고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5분 폐회 】